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41 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무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6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	제26조(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			
록) ① (생 략)	록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	②			
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				
어야 한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<u>2.</u> 독립한 사무소	<u>2. 사무소</u>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